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2009. 10 . .

제 출 자: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615호, 2008. 2.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2조)
- 나. 「주민등록법」이 동장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당초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했던 내용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2조제3호·제4호 삭제)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를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권한중”을 “권한 중”으로 하며,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중 “권한중”을 “권한 중”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후단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을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는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장으로 하여금”을 “동장에게”로 하며, “보고하도록”을 “보고하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민원여권과
입 안 자	실 · 과 · 소장 직위 · 성명	민원여권과장 이 춘 구
	담당 직위 · 성명	민원행정팀장 유 광 호
	담당자 성명(전화)	김 훈 천 (625-246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항에 따라----- 권한 중----- 위해----- .
제2조 (권한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및 제 4호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및 동장도 처리한다.	제2조(권한위임) ----- 권한 중 -- 각 호 ----- 그 밖에 ----- . <삭 제>
1. (생 략) 2. 법 제1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18조·동법시행령 제3조·제44조 및 제 44조의 2)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 <삭 제> <삭 제>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p>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동장</u>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u>보고하도록</u> 할 수 있다.</p>	<p>----- ----- -----.</p> <p>② ----- ----- <u>동장</u> <u>에게</u>----- <u>보고하게</u>-----.</p>

〈관계 법령발췌서〉

○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 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⑤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

우

④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8.12.17>

⑦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⑧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12.17>

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전산조직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제49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5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 ·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 · 적합성 · 공익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④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 · 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항 각 호의 사항
 2. 전산조직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여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서류 감축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